

지구온난화와 배출권거래*

- 독일의 배출권거래법제를 중심으로 -

한 귀 현**

차 례

- I. 머리말
- II.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 III. 배출권거래법의 주요내용
- IV. 배분법 2007에 따른 배출권의 배분원칙
- V. 배출권거래와 관련문제
- VI. 맺음말

I. 머리말

지구온난화는 영향의 규모, 심각성, 대응의 곤란성 등의 점에서 본다면 21세기 최대의 환경문제가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되어 있다. 2007년 4월 6일 발표된 유엔 산하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제4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지구온난화는 90% 이상이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 금세기말까지 시나리오별로 1.8~4℃까지 상승할 것이라 예측하여 점점

* 이 논문은 2006년도 순천대학교 학술연구비 공모과제인 「환경법상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연구」의 일부로서 연구된 것임.

** 순천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심지어 일부 과학자는 “인류가 멸종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섰다”고 경고하고 있는 바, 어쨌든 IPCC의 이번 보고서는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탓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기후변화 재앙에 대비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해 인류가 스스로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주로 산업혁명 이후의 공업화에 수반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증대와 대기중 농도의 상승에 있고, 영향의 발현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 국제간이나 세대간의 형평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련한 중요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요컨대 지구온난화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상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긴급성을 띤 기후변화문제에 대하여 온난화방지에 향한 교토회의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던 바, 교토의정서는 우리들 인류가 자연과 조화된 새로운 문명의 창조에 향하여 「환경의 시대」에 일보를 내딛는 출발의 신호이었다. 교토의정서 채택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에 대해 강제성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배출권거래의 채용)에 있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교토의정서에 의해 부과된 온실가스의 감축의무를 비용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에 「공동체에 있어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시스템 및 위원회의 지침 96/61/EG의 개정을 위한 유럽연합지침 2003/87/EG」(이하에서는 「EU배출권거래지침」(EH-Richtlinie)이라고 한다.)¹⁾를 발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독일에서는 「배출권거래법」(Treibhausgas-Emissionshandelsgesetz: TEHG) 및 배분법(Zuteilungsgesetz: ZuG)이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handelssystem)가 시행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기후변화의 극복에 있어서 생태적인 적확성(Treffericherheit)

1) Richtlinie 2003/87/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 13. 10. 2003 über ein System für den Handel mit Treibhausgasemissionszertifikaten in der Gemeinschaft und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96/61/EG des Rates, ABIEG Nr. L 275 v. 25. 10. 2003, S. 32.

과 경제적인 비용효율성을 겸비하고 있는 환경보호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바, 이에 본고에서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독일의 배출권거래법제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I.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1.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1) 규제적 수단의 한계와 경제적 수단의 대두

환경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종래에는 물론 오늘날에도 환경정책일반에 관해서는 규제적 수단이 여전히 중심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시생활형의 환경문제 및 지구환경문제 등에 있어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명확히 되고 있다. 이리하여 규제적 수단과 함께 그것 이외의 새로운 수단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는 바, 새로운 수단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시장메커니즘을 전제로 하여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여를 통해 각 주체의 경제합리성에 따른 행동을 유도함으로써 정책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수단인 「경제적 수단」이다. 이러한 경제적 수단에는 대표적으로 배출권거래와 더불어 환경세·부과금, 과징금, 보조금 등이 있다.

경제적 수단은 규제적 수단의 단점을 메우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경제적 수단에 관해서도 긴급히 중대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효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점 외에, 환경세·부과금에 관한 최적레벨의 세율·부과요율이나 배출권거래제도에 있어서 최적인 허용배출량의 할당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점, 배출권거래에 관해서는 발생원이 많으면 행정기관에 의한 모니터링이 곤란한 점 등의 단점도 있지만,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수단의 장점은 ① 그 해결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고, ②계속적인 기술혁신이 필요하지만, ③리스크가 불확실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대응하여야 하는 과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온난화문제에 있어서 매우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²⁾ 특히 배출권거래라는 수단은 경제적 수단 중에서도 총량규제적 성격이 강한 것이어서 실효성이 높고, 유연한 자원배분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처하기에 뛰어난 수단이다.

요컨대, 배출권거래를 비롯한 경제적 수단은 규제적 수단에 의해서는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 의미에서는 규제주의적인 틀을 전제로 하면서 그 기능부진 내지 한계를 보충하는 것으로서 성격지을 수 있다.³⁾

(2) 배출권거래제도의 의의

일반적으로 배출권거래(emissions trading, Emissionshandel)라 함은 “환경 혹은 자원과 관련된 허가(권리)를 비교가능한 정량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내지 “규제물질의 배출허용량을 총량으로서 정하여 각 주체(국가, 자치체, 기업-공장 등)마다 배출량을 할당하고, 할당량을 넘는 주체는 여유가 있는 주체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⁴⁾ 환언하면 규제물질의 총량을 고정하고 시장메커니즘을 통하여 규제물질의 총량규제를 행하는 것이다. 주체는 배출권을 구입하고 팔거나 스스로 배출량을 삭감한다는, 상황에 부응한 유연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구입자는 자조노력에 의한 삭감비용보다 배출권을 구입한 쪽이 값싼 경우는 배출권을 구입한다는 행동이 경

2) 大塚 直, 地球温暖化をめぐる法政策, 昭和堂, 2004, 116-117頁.

3) 한귀현, 環境리스크의 統制에 관한 法理, 環境法研究 第27卷 4號 (2005), 26면.

4) 배출권거래제도는 연혁적으로는 1970년 J.H. Dales에 의해 거래제도라는 형태로 처음 제안되기는 하였으나 배출권거래제도의 기본철학은 그 유래가 깊다. R. Coase(1960)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에 관한 논문에서 환경문제를 포함한 외부성(externality)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불명확하거나 또는 정의되지 않은 재산권(property right)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환경제에 대해 명확히 재산권을 정의해 줌으로써 경제주체간의 자발적 협상을 유도해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R. Coase의 환경제에 대한 재산권과 경제주체간 자발적 협상의 논리는 배출권거래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김용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동향분석 및 국내 도입방향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1면.

제합리적이고, 판매자는 잉여배출권을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비용효율이 뛰어난 확실한 삭감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삭감의식의 양성에도 이어지는 것이다.⁵⁾

요컨대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환경에 대한 재산권의 부재 혹은 불완전성에 있다는 인식하에,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설계하고 경제주체간에 배분하여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배출권의 거래가격은 판매자의 추가적 배출삭감비용보다는 크고 구매자가 절약하게 되는 삭감비용보다는 작은 수준에서 결정(합의)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총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거래참여업체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배출권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이와 같은 호혜적 거래가 모두 성사된다면 비용상으로 사회적 최적의 자원배분이 달성될 수 있다.⁶⁾

배출권거래제도의 유형에는 크게 캡 앤 트레이드형(cap-and-trade type)과 베이스라인 앤 크레딧형(baseline-and-credit type)이 있다. 우선 전자는 규제물질의 총배출량을 미리 설정하여 개개의 주체에게 배출량을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량의 일부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어떤 사업이 실시된 경우, 그 사업이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배출되었을 배출예상량(베이스라인)과 사업실시 후의 배출량을 비교하여 삭감된 분량(배출삭감량)을 크레딧으로서 제3자가 인정하여 거래를 행하는 것이다. 또한 캡 앤 트레이드형의 배출권거래에 있어서 배출량의 할당방법에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초기의 배출량을 할당하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과 초기할당을 행하지 않고 정부가 배출량을 공개입찰 등에 의해 판매하는 「옥션」(auction)이 있다. 전자는 과거의 실적으로 배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배출량획득의 비용은 들지 않지만, 후자는 획득기회의 공평성, 투명성은 있지만 배출량획득에 비용이 든다. 또한 전자는 획득배출량을 예상하기 쉽지만, 후자는 배출량확보의 예상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배출권거래의 장점으로서의 첫째, 규제물질의 사회적 삭감비용을 저감

5) 濱坂豊澄, 温暖化対策としての排出量取引制度の導入, 立法と調査·別冊, 2006. 1, 52頁.

6) 김용건, 위 연구보고서, 1-2면.

(비용효율적)할 수 있고, 둘째, 총량목표가 명확하고 목표달성이 상대적으로 확실하며, 셋째, 삭감노력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설비의 갱신 등에의 인센티브가 작동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배출권거래를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①배출권의 할당의 방법, ②배출량의 정확한 모니터링과 그 결과의 제3차 기관에 의한 검증의 방법, ③크레딧의 구입에 대한 감시와 감사의 필요성, ④할당량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의 조치 등이 그 과제로서 지적되고 있다.⁷⁾

2. 지구온난화대책으로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채용

대기중의 온실가스농도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Climatic Change Convention)⁸⁾에 기초하여 1997년 교토에서 개최된 제3회 체약국회의에서 채택되었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가장 큰 특징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치목표를 설정한 점에 있다. 즉, 교토의정서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에 기재되어 있는 동 조약체약국에 대하여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6종류의 온실가스를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제1차 의무이행기간에 1990년에 비하여 선진국 전체로 5.2% 삭감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삭감목표치도 유럽연합(EU)은 8%, 미국(미비준)은 7%, 일본은 6% 등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선진국이 국내대책만으로 이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곤란을 수반하고, 수치목표는 비현실적인 숫자라는 비판도 행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타협 하에 합의된 이른바 「교토메커니즘」이란 선진국이 삭감목표를 국내대책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타국과의 공동사업이나 거래에 의해 얻은 배출량을 자국의 배출량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교토의정서에서는 국내대책의 보충적인 것으로서의 「유연성조치」로서 공동실시(Joint Implementation: JI),

7) 濱坂豊澄, 前掲論文, 52-53頁; 김용건, 위 연구보고서, 3-5면.

8) 1992년 지구환경정상회의에서 채택되어 1994년에 발효된 동 협약은 각국간에서의 협력의 메커니즘만을 정한 조약이고, 가맹각국이 부담해야 할 구속적 의무 등의 명확화는 조약 발효 후에 개최되는 체약국회의(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에서 채택되는 의정서에 맡겨졌다.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및 국제배출권거래(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IET)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에 부과된 8%의 삭감목표는 이른바 「부담분담협정」(EU Burden Sharing Agreement)에 의하여 가맹국에 상이하게 배분되었는 바, 그것에 따르면 독일은 1990년에 비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약 21% 감축하여야 한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연합 역내에서 배출권거래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EU배출권거래지침」이 2003년 10월 13일 성립되어 동년 10월 25일 발효되었으며, 이것에 의하여 EU배출권거래제도가 2005년 1월부터 개시되었다.⁹⁾

III. 배출권거래법의 주요내용

1. 서

독일에서는 EU배출권거래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체에 있어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지침 2003/87/EG의 전환에 관한 법률」이 2004

9) EU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해서는, E. Rehbinder/M. Schmallholz, Handel mit Emissionsrechten für Treibhausgase in der Europäischen Union, UPR 2002, S. 1 ff.; A. Reuter/K. Kindereit, EG-Emissionshandelsrichtlinie und Beihilferecht am Beispiel prozessbedingter Emissionen, DVBl. 2004, S. 537 ff.; 大塚 直, EU의排出枠取引制度とわが國の課題,ジュリスト 第1296號 (2005), 36頁 이하 참조.

한편 EU배출권거래제도의 개시와 동시에 2005년 1월부터 발효된 「링크지침」(Richtlini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2003/87/EG über ein System für den Handel mit Treibhausgasemissionszertifikaten in der EU im Sinne der projektbezogenen Mechanismen des Kyoto-Protokolls: Linking Directive)은 EU배출권거래에서 거래되는 크레딧(EAU: European Allowance Unit)과 EU 역외에서 행해진 교토의정서의 제도하에서 행해지는 CDM 프로젝트에서 얻어지는 크레딧(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및 JI 프로젝트에서 얻어지는 크레딧(EUR: Emission Reduction Unit)을 EU 각국의 목표달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링크지침의 의의에 대해서는, 木村ひとみ, EU排出枠取引制度リンク指令と將來枠組みにおける展望, 環境研究 第140號 (2006), 165頁 이하 참조.

년 7월 15일 발효되었는 바,¹⁰⁾ 이 조항개정법률(Artikelgesetz)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Treibhausgas-Emissionshandelsgesetz(TEHG), 이하에서는 「배출권거래법」이라고 한다.)¹¹⁾ 및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약간의 연방이미시온방지법의 개정¹²⁾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 국내배분계획에 기초하여 제정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배분기간에 있어서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국내할당계획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ZuG 2007, 이하에서는 「배분법 2007」이라고 한다.)이 2004년 8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배출권거래법은 우선 대강법(Rahmengesetz)이자 절차법이다.¹³⁾ 동법은 배출권거래제도의 기본방침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를 위한 행정상의 요건을 마련하고 있는 바,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2. 목적 및 적용범위

배출권거래법의 목적은 온실가스를 특히 배출하는 활동에 대하여 EU역내의 배출권거래제도에 있어서 온실가스배출권의 거래의 기반을 정비하고, 또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의 삭감을 통하여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책에 이바지하는데 있다(동법 제1조).

동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우선 동법은 동법 부록 1에 언급되어 있는 온실가

10) Gesetz über die Umsetzung der Richtlinie 2003/87/EG über ein System für den Handel mit Treibhausgasemissionszertifikaten in der Gemeinschaft (BGBl I S. 1578); z. RegE d. TEGH v. 17. 12. 2003 sowie der 34. BImSchV. 독일에서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渡邊理繪, EU排出枠取引導入におけるドイツの経験, 環境研究 第133號 (2004), 78頁 이하 참조.

11) Art. 1 des Gesetzes.

12) Art. 2 des Gesetzes.

13) D. Weinreich/S. Marr, Handel gegen Klimawandel - Überblick und ausgewählte Rechtsfragen zum neuen Emissionshandelssystem, NJW 2005, S. 1078.

스, 즉 이산화탄소(CO₂)가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동법 제2조 제1항).¹⁴⁾ 동법은 부록 1에서 열거된 활동들, 즉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변환, 철금속제조 및 철금속가공, 시멘트·유리·도자기 산업, 제지 시설 및 펄프시설에 대해서 적용된다.¹⁵⁾ 요컨대 배출권거래법은 우선 동법의 부록 1에 언급되어 있는 에너지집약적인 시설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항 2문에 의해 배출권거래법은 부록 1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시설의 이미시온방지법상 개별의 허가를 요하는 시설부분 또는 부대시설로서 부록 1에서 언급된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배출권거래법은 그 시설이 신규의 원재료, 연료, 생산물의 연구, 개발 혹은 시험, 또는 실험기준 혹은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의 배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동법 제2조 제4항).

한편 배출권거래법은 EU배출권거래지침에 상응하게 2008년부터는 그 밖의 온실가스집약적인 활동 및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포괄되어 있는 온실가스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구상되어 있다. 즉, 배출권거래를 그 밖의 활동, 시설 및 온실가스에 확대하는 것은 EU배출권거래지침 제24조에 의하면 2008년부터 위원회의 동의 후에 가능하며, 그 경우에 온실가스는 거래의 목적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등 가물(CO₂-Äquivalente)로 환산된다.

14) 동법 제3조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온실가스」(Treibhausgas)라 함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일산화이질소(N₂O), 플루오르탄화수소(FKW), 과불화탄소(PFC) 및 육불화황(SF₆)을 말한다 고 하여 교토의정서에서의 온실가스와 마찬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부록 1에 언급되어 있는 온실가스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되는 바, 동법의 부록 1에서는 단지 이산화탄소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15) 한편 시설개념의 해석과 관련하여 배출권거래법 부록 1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변환의 활동」은 이러한 연소시설이 20 MW 이상의 연소열전도(Feuerungswärmeleistung)로 가동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폐기물소각시설을 제외하고) 배출권거래에 참여하여야 하는 산업에 속한다. 아울러 연소시설에 관해서는 내부의 연소시설(interne Feuerungsanlagen)도 법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Vgl. S. Kobes, Grundzüge des Emissionshandels in Deutschland, NVwZ 2004, S. 5. 한편, 현재 독일에서는 약 1,850여 개의 시설이 배출권거래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한다(D. Weinreich/S. Marr, NJW 2005, S. 1078).

3. 배출허가

배출권거래법의 부록 1에 언급되어 있는 활동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다만 현재로서는 이산화탄소)의 방출에는 동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Genehmigung)를 요하는 바,¹⁶⁾ 이것은 EU배출권거래지침 제4조를 전환한 것이다. 책임자¹⁷⁾가 자신의 활동에 의해서 초래되는 배출량을 산출하고 또한 그것에 관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것이 허가의 전제가 된다(동조 제2항).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요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이미시온방지법상의 허가가 배출권거래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허가로 된다(동조 제6항). 배출권거래법의 시행전에 연방이미시온방지법에 의해 허가를 얻고 있는 시설로서 당해 허가에 배출권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부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허가가 특히 감독 및 보고에 관련하여 그 이상의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 소관행정청은 발부되어 있는 허가를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17조에 의한 사후적 명령을 통해서 적합시킬 수가 있다(동조 제7항). 조업자는 이와 같은 시설을 동법 시행후 3개월 이내에 소관행정청에 신고해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¹⁸⁾

한편 동법 제4조 제9항·제10항에 의하여 책임자는 활동의 변경계획(특히 입지조건, 조업방법, 조업규모에 관한 변경계획) 또는 책임자의 변경 등에 관해서는 소관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6) 허가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배출권거래제도에의 책임자의 참가가 확보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자가 자신의 온실가스배출을 감독하고 또한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 Vgl. auch Art. 5 und 6 EH-Richtlinie; VG Karlsruhe, NVwZ 2005, S. 112.

17) 배출권거래법 제3조 제5항에 의하면 동법에 있어서 「책임자」(Verantwortlicher)라 함은 동법에서 말하는 활동에 관하여 직접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당해 활동의 경제적 리스크를 부담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4조 제1항 3문에서 말하는 요허가시설(genehmigungsbedürftige Anlagen)의 경우에 있어서 책임자는 시설의 조업자이다.

18) 관찰과 관련하여 배출권거래법 제20조에 의하면, 동법 제4조 및 제5조를 시행하는 소관행정청은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4조 제1항 3문에서 말하는 허가를 요하는 시설에 관해서는 주법에 의해 그것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이 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연방환경청의 관찰로 하고 있다.

4. 보고의무

배출권거래법 제5조는 「배출량의 산정 및 배출보고(Emissionsbericht)」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책임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曆年에 있어서 자신의 활동이 초래하는 배출량을 산정하여 이듬해 3월 1일까지 소관행정청에 배출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는 바(동조 제1항), 보고는 배출삭감(Emissionsreduktion)을 위한 척도이다.¹⁹⁾ 배출량의 산정은 동법의 부록 2 및 모니터링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행해져야 하며, 또한 배출보고는 그 제출 전에 소관행정청에 의해 공표된 전문가에 의해 동법의 부록 3·4에 따라서 심사가 행해져야 한다(동조 제3항). 게다가 동조 제1항에 의한 배출의 보고 및 제3항에 의한 심사의 보고에 관해서는 소관행정청에 의해서 무작위추출검사가 행해진다.²⁰⁾

한편 동법 제5조에 의한 요구에 대응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소관행정청은 제3자에의 배출권의 이전에 사용되는 책임자의 계좌의 정지를 명하고, 계좌의 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소송은 정지효(aufschiebende Wirkung)를 가지지 않는다(동법 제17조 제1항·제2항).

5. 배분계획

연방정부는 각각의 배분기간에 대하여 국내배분계획(Nationaler Zuteilungsplan)을 결정하는 바, 이것은 국내배분계획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되고 그 법률에 근거하여 배분이 행해진다(동법 제7조). 배분계획은 배분기간내에 있어서 배분되는 배출권(Emissionsberechtigungen)의 총량 및 이것을 개개의 활동에 관하여 책임자에게 배분하고 발행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U배

19) U. Sudmann/A. Fisahn, Die Umsetzung des Emissionshandels in Deutschland, UPR 2004, S. 415. 한편, 보고의무(Berichtspflicht)에 관해서는 상응하는 독일의 법규명령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유럽 모니터링 가이드라인(Europäische Monitoring Guidelines)이 존재한다.; Abl. L 59, v. 26. 2. 2004, S. 2.

20) 이와 같이 감독은 부분적으로는 조업자에게 옮겨져 있으며, 보고의 심사, 따라서 시설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통제의 심사는 란트행정청의 권한에 속한다.

출권거래지침 제9조 제1항에서는 국내배분계획은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기준에 기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배분계획도 그 형성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국내할당계획 가이드스(NAP-Guidance)에 따라서 규정되는 바, 그 경우에 가이드스는 동시에 배분계획의 적법성을 위한 기준이 된다.²¹⁾

한편 독일에서는 국가의 배출목표를 명시함과 아울러 배분규정(Zuteilungsregeln)을 확정하고 있는 국내할당계획에 기초하여 배분법 2007이 제정되어 있는 바, 이것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6. 배출권의 배분

배출권거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책임자는 국내할당계획에 관한 법률, 즉 배분법에 따라서 배출권의 배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배출권의 배분은 동법 제10조 제3항에 의한 신청에 기초하여 각 배분기간에 대한 각 활동마다 행해진다(동조 제2항). 또한 구체적으로 연간 어느 정도의 배분량(Teilmengen)이 발행되는가에 관해서는 배분법 2007에 따라서 배분결정이 확정된다. 배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소송은 행정법원법 제80조 제1항과는 달리 정지효를 가지지 않는다(동법 제12조).

배분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소관행정청에 문서에 의한 신청을 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배분이 행해지는 바, 그것은 소관행정청에 의해서 설정된 電子書式을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동법 제10조 제1항·제2항). 제1배분기간에 관한 신청은 배분기간의 개시에 앞서 각기 그 해의 3월 31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배분결정은 늦어도 배분기간 개시 3개월 전까지 행해지지만, 다만 제1배분기간에 관한 배분결정은 신청기간 종료후 6주간 후에 행해진다. 한편 소관행정청은 배분절차에 있어서 행해진 신고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도 조사할 수 있으며, 특히 배분결정이 부정당한 신고에 의거하고 있다는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행해지지

21) S. Kobes, NVwZ 2004, S. 516. 한편 배분결정에 대한 권리구제에 있어서 묵시적으로 할당계획도 함께 심사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에 계획에 대한 독립적인 권리구제는 사용할 수 없다(U. Sudmann/A. Fisahn, UPR 2004, S. 415).

않으면 안 된다(동법 제11조).

7. 배출권의 반환

배출권거래법 제6조 제1항에서는 EU배출권거래지침 제12조 제3항의 전환으로서, 책임자로 하여금 2006년부터 매년 4월 30일까지 자신의 활동에 의해서 전년도 의 曆年에 초래된 배출과 일치하는 배출권의 총수를 소관행정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이러한 제출의무(Abgabepflicht)는 새로운 허가거래시스템의 주요의 무(Kardinalpflicht)이며, 또한 배출량의 산정 및 보고에 대한 기본의무에 의해서 보조되어 있다. 이러한 주요의무의 이행을 통해서만 그때마다 책임자는 실제로 방출 된 자신의 배출을 적법화할 수 있다.²²⁾ 요컨대 반환의무(Rückgabeverpflichtung) 의 범위는 조업자의 활동에 의해서 야기된 배출량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는 바, 즉 몫에 따라(anteilmäßig) 실제의 배출에 관련되어 있다. 반환에 의해서 배출권 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시 말하면 조업자는 자신의 배출을 이 시점 이후 허가 증의 수량으로 감축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²³⁾

한편, 배출권거래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배출권은 원칙적으로 각각의 배분 기간에 적용되지만, 기한이 종료한 배분기간의 배출권은 배분기간종료 4개월 후 에 다음의 배분기간의 배출권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배출권거래법의 이른바 「유 보」(banking)의 허용성에도 불구하고 배분법 2007 제20조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제1배분기간의 배출권은 제2배분기간에 유보되지 않는다고 규정 하여 배출권의 유보를 배제하고 있다. 어쨌든, 제2기의 배분기간 이후에는 유보 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하여 조업자로서는 삭감의무의 이행에 있 어서 공간적인 유연성과 함께 시간적인 유연성도 가지게 될 것이다.²⁴⁾

22) C.-S. Schweer/Ch. v. Hammerstein, Treibhausgas-Emissionshandelsgesetz (TEHG), Kommentar, 2004, S. 173.

23) U. Sudmann/A. Fisahn, UPR 2004, S. 416.

24) U. Sudmann/A. Fisahn, UPR 2004, S. 417.

8. 배출권 및 배출허가증의 인정

EU배출권거래지침에 기초하여 유럽연합의 다른 가맹국에 의해 발행된 배출권은 독일에서 발행된 배출권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동법 제13조 제1항). 또한 교토의정서 제6조제12조에 의한 프로젝트에 기초한 배출크레딧(Emissionsgutschriften) 및 EU배출권거래지침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상호 배출권을 인정하는 협정을 맺은 제3국에서 발행된 배출권은 소관행정청에 의해 독일에서의 배출권으로 전환된다(동조 제2항·제3항).²⁵⁾

9.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의 거래를 위한 요건은 배출권을 위한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독일의 전환은 시장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시장은 행정청의 통제 하에 남아 있어서 시장의 동향이 주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배출권거래등록부(Emissionshandelsregister)가 마련되는 바, 배출권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독일에서 그것은 소관행정청에 의한 전자데이터은행, 즉 연방환경청 산하에 있는 독일배출권거래소(Deutsche Emissionshandelsstelle: DEHSt)의 형태로 행해져 있다. 등록부에는 배출권의 계좌가 포함되고 사용한도(Verfügungsbeschränkungen)가 명시되며, 또한 개개의 활동으로부터의 심사되고 보고된 배출에 관한 기록부가 포함되어 있다(동법 제14조 제1항).

각각의 조업자는 신청에 의해 전자거래등록부에 계좌를 취득하고, 계좌에는 배출권의 발행, 보유, 이전 및 제출에 의한 말소가 기록된다. 계좌의 보유자는 자기 자신의 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에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다(동조 제2항·제3항).

배출권의 이전은 합의 및 구입자의 계좌에의 등록에 의해 행해지고, 누구에 대하여 배출권이 등록된 경우에도 등록부의 내용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된다(동법 제16조). 이와 같이 배출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 등록부의 내용의 적법성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25) 이에 관한 상세는, Vgl. C.-S. Schweer/Ch. v. Hammerstein, a.a.O., S. 315 ff.

10. 실시 및 통제

(1) 감독

배출권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각각의 소관행정청은 동법 및 동법에 근거하는 법규명령의 집행을 감독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 책임자, 활동이 행해지는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한 출입권, 검사권(Prüfungsrechte) 및 정보요구권(Auskunftsrechte)을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21조 제2항).

(2) 제재

배출권거래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는 동법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제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동법 제5조에 의한 요구에 대응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 행정청에 의해서 제3자에의 배출권의 이전에 사용되는 책임자의 계좌의 정지가 명해지고(동법 제17조 제1항), 또한 동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출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배출권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이산화탄소 1톤당 100 유로(다만 제1기에는 40 유로)의 지급의무(Zahlungspflicht)가 부과된다(동법 제18조 제1항).²⁶⁾

26) 바로 이 지급의무를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바, 가격의 하락은 배출권거래의 지도효과(Lenkungswirkung)의 약화를 가져온다. 즉, 기업들은 배출권의 시장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저감조치에 투자하는 대신에 오염권(Verschmutzungsrechte)을 구입한다. 조업자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보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하며, 따라서 이산화탄소 방출의 감소를 취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독일을 비롯한 가맹국들은 국내할당계획에서 자신의 산업들에게 충분한 것보다 더 많은 배출권을 공급하는 경향이 있는 바, 즉 초과할당(Überallokation)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위원회(EU-Kommission)는 우선 2005년 1월 1일에 시작되는 배출권거래를 위한 기본틀을 형성하는 데에만 집중할 나머지, 국내할당계획의 내용에 있어서는 관대한 모습을 나타내어 EU배출권거래지침 제9조 제3항에 따른 통제권한(Kontrollkompetenz)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행사하였다고 지적되고 있다(Vgl. U. Sudmann/A. Fisahn, UPR 2004, S. 417 f.). 어쨌든, 전체적으로 배출권거래시장이 직면해 있는 딜레마는 분명해진다. 배출권의 가격이 초과할당으로 인하여 매우 낮은 경우, 배출을 삭감할 동기는 더욱

다음으로, 배출권거래법 제19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동법 제4조의 배출허가 없이 활동을 행한 자, 제4조 제9항·제10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제21조 제2항에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으로서 최고 5만 유로의 범칙금(Geldbuße)을 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IV. 배분법 2007에 따른 배출권의 배분원칙

배출권의 배분은 배출권거래제도에 있어서 중심적인 의의를 가진다. 즉, 그것은 환경정책수단으로서의 배출권거래의 제어를 보장한다. 배분에 의해서 각각의 배분기간에 있어서의 할당된 권리의 총량이 규정되며,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배출권거래의 절대적인 양의 제한(Mengenbeschränkung)이 보장되어 있다.

배분기간에 있어서의 배출권의 배분은 배출권거래법에 따라서 국내배분계획, 즉 국내할당계획(Nationaler Allokationsplan: NAP) 및 배분법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국내배분계획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위한 양의 기본구상(Mengengerüst)에 관한 정책적 확정 및 유럽위원회에 통보되어야만 하는 배분규정에 관한 정책적 확정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할당계획은 동 계획에서 예정되어 있는 배분규정을 독일에서 법구속적으로 확정하고 있는 배분법을 위한 기초를 이루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제1기에 있어서 이것은 배분법 2007이며,²⁷⁾ 동법은 배분법시행령 2007(ZuV 2007)²⁸⁾에 의하여 보충되어 있다.²⁹⁾

더 떨어진다. 반대로, 가격이 매우 높은 경우, 조업자는 있을 수 있는 생산의 동요 또는 기상상태에 대해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출권을 비축하기 때문에 시장이 생기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7)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v. 26. 8. 2004 (BGBl. I S. 2211).

28)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v. 31. 8. 2004 (BGBl. I S. 2255). 동시행령은 benchmarks, 이산화탄소배출의 산정 및 신청서류에 대한 세부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배분법 2007 제4조에 의하면 독일의 배출량의 삭감목표는 2005년부터 2007년의 기간(제1기)에는 연간 8억 5,900만 톤, 2008년부터 2012년의 기간(제2기)에는 연간 8억 4,400만 톤으로 되어 있다. 이 중 배출권거래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산업부문에 대한 배분량은 제1기에는 연간 5억 300만 톤, 제2기에는 4억 9,500만 톤이다.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삭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법 제5조에서는 이행계수(Erfüllungsfaktor)를 0.9709로 정하고 있다.³⁰⁾ 또한 신규시설에 배분하기 위해 900만 톤의 예비분(Reserve)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조).

따라서 개별시설에 대한 배출권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기준연도(2000년~2002년)의 개별시설에서의 평균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이행계수를 곱하여 산출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기존시설에는 Grandfathering이, 신규시설에는 benchmark이 사용된다.

1. 현존시설

(1) 과거의 배출량에 기초한 배분

현존시설(Bestandsanlagen)에 대한 배출권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배출량에 기초하여, 즉 Grandfathering의 원칙(Grandfathering-Prinzip)에 따라서 행해진다. 배분법 2007 제7조에 의하면 2002년 12월 31일까지 조업개시되었던 시설에 대한 배출권의 배분은 일반적으로는 2000년~2002년의 기준기간

29) 배분법 2007 및 배분법시행령 2007의 사물적 토대 위에서 시설의 개개의 조업자에 대한 최종적인 배분결정은 배분절차의 범위내에서 연방환경청의 행정행위를 통해서 행해진다. 배분결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행정법적 수단 즉, 추가적인 권리의 배분에 맞추어져 있는 의무화소송(Verpflchtungsklage), 부관에 대한 일부취소소송(Teilanfechtungsklage) 또는 경업자에의 배분에 대한 제3자취소소송(Drittanfechtungsklage) 등이 열려 있다. Vgl. D. Weinreich/S. Marr, NJW 2005, S. 1080 f.

30) 다시 말하면 기준기간에 평균적으로 1,000t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한 기업은 970.9t의 무효의 허가증을 받는다. 이행계수의 목적은 개개의 시설에 배분하여야만 하는 권리의 양을 정해져 있는 배출량(Emissionsbudget)과 일치하도록 제한하는데, 즉 결국 배출삭감이 달성되도록 하는데 있다.

에 있어서의 배출량에 기초하여 행해진다.³¹⁾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설의 생산용량이 확대되거나 축소된 경우에는 기준기간의 배출량은 시설의 생산용량의 최종적인 확대 또는 축소부분이 조업개시된 시점에서 산정한다(동법 제7조 제6항). 요컨대 동법 제5조에 따른 이행계수 및 경우에 따라서는 동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비례적인(anteilig) 삭감이 동법 제7조 제1항-제6항에 따른 배분의 기초가 되어 있다. 게다가 현존시설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동법 제11조에 따른 배분의 선택권이 존재한다.

(2) 신고된 배출량에 기초한 배분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조업개시되었던 시설에 대한 배출권의 배분은 당해 시설의 조업자에 의해서 신고된 평균 연간 이산화탄소배출량에 따라서 행해지는 바, 그 경우에 당해 시설의 평균 연간 이산화탄소배출량은 당해 시설의 생산용량, 예측연간평균기동능력수준 및 그 시설에서 제조되는 각 제품의 배출치(Emissionswert)를 곱한 값에 의해 정해진다(동법 제8조 제1항 1문-3문). 신고된 배출량에 기초하여 배출권이 배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조업개시된 해의 이듬해부터 12년 동안은 동법 제5조의 이행계수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컨대 이러한 규정의 배경에는 당해 시설에 대해서는 이른바 Grandfathering의 원칙에서 말하는 배출권이 배분될 수 있는 과거의 배출량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고가 있다.³²⁾

한편 동법 제8조 제1항에 기초한 배분은 당해 시설의 사업자 측에의 특별한 보고의무³³⁾에 의해서 확보되는 이른바 「사후적합」(ex post-Anpassung) 하에 놓

31) 1999년 12월 31일까지 조업개시되었던 시설에 대한 기준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조업개시되었던 시설의 기준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조업개시되었던 시설에 대한 기준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그리고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조업개시되었던 시설에 대한 기준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동법 제7조 제2항-제5항).

32) D. Weinreich/S. Marr, NJW 2005, S. 1082.

여 있다. 전년도의 실제의 생산량이 신고된 것보다 더 적은 경우, 소관행정청은 배분결정을 철회하고 또한 실제의 생산량을 고려하여 배분량을 새로이 확정하며, 시설의 조업자는 여분으로 발행된 배출권을 반환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게다가 신고된 배출량에 기초한 배출권의 배분에도 동법 제11조에 따른 배분의 선택권이 존재한다.

2. 대체시설로서의 신규시설

현존하는 시설을 대체하는 신규시설의 조업자는 그 신청에 기초하여 배분법 2007 제10조의 이른바 「양도규정」(Übertragungsregel)에 따라서 배분을 받을 수 있는 바, 대체시설(Ersatzanlagen)이 동법의 부록 2에 따라서 대체된 시설, 즉 기존시설(Altanlagen)과 필적할 것이 그 요건이다. 대체시설로서의 신규시설에 대한 배출권의 배분과 관련해서는 4년간의 사업년도 동안에는 대체된 시설에 적용되었을 이행계수가 사용되며, 그 후 14년간은 이행계수를 적용함이 없이 배출권이 신규시설의 조업자에게 배분된다(동조 제1항). 또한 신규시설의 생산용량이 대체된 시설의 생산용량을 넘는 경우 그 차이에 대해서는 동법 제11조에 따라서 배출권의 배분을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신규시설의 생산용량이 대체된 시설의 생산용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생산용량의 차이에 비례하여 삭감된다(동조 제2항).

3. 추가적인 신규시설

2005년 이후 조업개시되는 추가적인 신규시설에 대한 배출권의 배분은 예측되는 평균연간생산량에 기초하여 행해진다(동법 제11조 제1항). 다만, 그 경우에는 배분법 2007 제8조와는 달리 당해 신규시설에 있어서의 최선의 사용가능한 기술 (beste verfügbare Techniken: BVT)에 따른 배출치가 기초가 된다(이른바 benchmark). 이와 관련해서는 발전시설에 관한 동법 제11조 제2항 외에, 특히

33) 당해 시설의 조업자는 당해 배분기간의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행정청에 전년도의 실제의 생산량을 보고하고 또한 적절한 형식으로 증명할 의무를 진다(동법 제8조 제3항).

배분법시행령 2007 제12조 제2항 제1호-제7호에서는 다수의 제품에 관하여 최선의 사용가능한 기술에 따른 배출치를 확정하고 있다.³⁴⁾ 배분법 2007 제11조에 따른 추가적인 신규시설에 대한 배출권의 배분에 대해서는 이행계수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동법 제8조 제3항·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적합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특별배분규정

배분법 2007은 배출권의 배분과 관련하여 상술한 배분의 기본규정과 함께 약간의 특별배분규정, 즉 조기의 배출삭감(제12조), 프로세스에 관련된 배출(제13조) 및 열전기병합시설에 대한 특별배분(제14조),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의 폐쇄시의 특별배분(제15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조기의 배출삭감

우선 배분법 2007 제12조에서는 이른바 조기의 배출삭감(frühzeitige Emissionsminderungen)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즉, 조업자가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완료된 현대화조치에 기초한 배출삭감량을 증명하는 경우, 소관행정청은 조업자의 신청에 기초하여 동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현대화조치가 완료된 이듬해부터 12년간 이행계수 1을 사용한다.³⁵⁾ 다만, 대체 없는 시설의 조업중지 혹은 생산감소에 의해서 야기된 배출삭감 또는 법령의 실시에 의한 배출

34) 배분법시행령 2007 제12조 제3항 제3문에 있어서의 「최선의 사용가능한 기술」에 대한 정의는 IVU-지침의 통합적 환경보호(integrierter Umweltschutz)라는 접근에 기초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전체적으로 환경을 위한 높은 보호수준), 특히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정도로 삭감되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기후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Vgl. D. Weinreich/S. Marr, NJW 2005, S. 1082.

35) 동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배출삭감량(Emissionsminderung)이란 「참조기간(1991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으로서 신청자가 선택한 연속하는 3년으로 구성된다.)에 있어서의 당해 시설의 각 제품단위마다의 평균연간에너지기원의 이산화탄소배출량과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준기간에 있어서의 당해 시설의 각 제품단위마다의 평균연간에너지기원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의 차이」를 말한다.

삭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조기의 배출삭감의 승인에 있어서 조업자는 1994년부터 연도에 따라 단계지워진 특별한 배출의 감소를 특정한 백분율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 배출량이 40% 이상 삭감된 것이 증명된 경우 제1기 및 제2기의 배분기간에 관해서는 이행계수 1이 적용된다(동조 제1항).

또한 동법 제12조 제5항에 의하면, 당해 시설의 조업개시가 1994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행해진 경우에는 조업자의 신청에 기초하여 동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업개시시점의 이듬해부터 12년간은 배출삭감을 증명함이 없이 이행계수 1이 적용된다.

(2) 프로세스에 관련된 배출

프로세스에 관련된 배출(prozessbedingte Emissionen)이 당해 시설의 총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는 경우, 소관행정청은 조업자의 신청에 기초하여 프로세스에 관련된 배출에 관해서는 이행계수 1을 적용한다(동법 제13조 제1항).³⁶⁾ 이 경우, 프로세스에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의 조사는 일반적으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관련된 원료투입에 대해서 행해지지만, 시멘트클링커, 가성 석회 및 백운석의 생산으로부터의 프로세스에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의 조사는 제품생산능력(Produktausstoß)에 대해서 행해진다(배분법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항).

(3) 열전기병합시설에 대한 특별배분

배분법 2007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소관행정청은 조업자의 신청에 기초하여 2002년 3월 19일의 열전기병합법(Kraft-Wärme-Kopplungsgesetz)³⁷⁾ 제3조에서 말하는 열전기병합시설(KWK-Anlagen)³⁸⁾의 조업자에 대해서는 전술한

36) 프로세스에 관련된 배출이란 「연소 이외의 화학반응의 생성물로서 발생하는, 대기에의 이산화탄소의 모든 방출」을 말한다(동법 제13조 제2항 1문).

37)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Kraft-Wärme-Kopplungsgesetz) (BGBl. I S. 1092).

배출권의 배분에 관한 기본규정에 의해 배분되는 배출권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할당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년도에 실제로 발전된 열전기병합 총발전량(KWK-Nettostrommenge)이 그 해의 배분결정의 기초가 되어 있는 발전량보다도 적은 경우, 소관행정청은 과거에 소급하여 배분결정을 취소한다. 그 경우에, 각 연도의 배분배출권은 실제의 열전기병합 총발전량이 배분결정의 기초가 되어 있는 발전량을 1% 하회할 때마다 5% 삭감된다. 또한 열전기병합 총발전량이 배분결정의 기초가 되어 있는 발전량과 비교하여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배분법 2007 제 14조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배분은 행해지지 아니한다(동조 제6항).

(4) 원자력발전소의 폐쇄 시의 특별배분

배분법 2007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의 조업자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에 원자력발전소의 가동허가(Berechtigung zum Leistungsbetrieb)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소관행정청은 배출권거래법 부록 1의 1 내지 3에 기초하여 신청인에 의해서 지정된 시설의 조업자에게 신청인에 준하여 배출권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소관행정청은 매년 총량 150만 톤 상당의 이산화탄소의 배출권을 신청을 행한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용량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바, 그 경우에 배출권은 배분의 기초가 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허가의 실효 후에 발행된다.

5. 비전형적인 경우의 고려를 위한 배분규정

배분법 2007의 원안에서는 이른바 선의의 피해에 대한 구제규정(Härtefallregel)으로서 동법 제7조 제10항만을 포함하고 있었지만,³⁹⁾ 의회의 입법과정에서 동법 제7조 제11항·제12항이 법률에 보충적으로 채용된 경위가 있다.⁴⁰⁾

38) 열전기병합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열전기병합시설이란 「전기와 이용열(Nutzwärme)을 발생시키는 증기터빈시설, 가스터빈시설, 가솔린엔진시설, 스티어링엔진(Stirling-Motoren), 증기기관시설, 오거닉 랭킹 사이클 시설(Organic Rankine Cycle: ORC), 연료전지시설」을 말한다.

39) Vgl. Gesetzesbegr., BT-Dr. 15/2966, S. 20.

(1) 배분법 2007 제7조 제10항

배분법 2007 제7조 제10항은 특별취급(Sonderbehandlung)이 고려되는 비 전형적인 경우의 통상적인 예들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동조 제10항에서 정식화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요건을 누적적으로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동법 제7조 제1항-제5항에 따른 과거의 배출량에 기초한 배출권의 배분이 당해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기간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⁴¹⁾ 둘째,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배분기간에 당해 시설에 의해서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출권보다도 25% 이상 적을 것, 셋째, 그것에 의해서 당해 시설의 경제적인 리스크를 부담하는 기업에 대하여 중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을 것이 그 요건이다. 이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효과로서 동법 제8조의 적용하에 배출권의 배분이 확정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이행계수의 적용에는 영향이 없으며, 또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배분기간에 추가적으로 배분되는 배출권의 총량이 300만 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배분은 비례적으로 삭감된다(동조 제10항 2문·5문).

40) D. Weinreich/S. Marr, NJW 2005, S. 1083.

41) 「특별한 사정」이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즉 ①시설의 수리, 정비, 현대화 또는 그 밖의 기술적인 이유에 의해 장기간에 걸친 가동정지기간이 있었던 경우, ②시설 자체의 조업개시 또는 단계적인 확충, 가동전 혹은 가동후의 시설, 시설의 일부, 또는 부대설비에 의하여 서서히 완전가동하게 되었던 시설, ③이전에는 다른 시설, 시설의 일부 또는 부대설비에서 실시되었던 제조공정 혹은 기술공정이 그러한 시설이나 설비가 가동정지되었거나 동법의 적용 밖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당해 시설에서 실시되는 경우, 또는 ④조업시간 중에 공정기술상 회피할 수 없는 연료효율의 감소(Brennstoff-Effizienzeinbußen)를 나타내고 있는 시설 등을 의미한다(동조 제10항 3문). 특별한 사정으로서 언급된 이러한 예들은 기술적인 성질이 있고 또한 기업조직상의(betriebsorganisatorisch) 측면에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시설 또는 조업자에 특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경기에 따른 영향 또는 수요의 변화는 모든 경쟁시설에도 마찬가지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으로서 주장될 수는 없을 것이다. D. Weinreich/S. Marr, NJW 2005, S. 1083; vgl. BR-Dr. 424/04, S. 6; BT-Dr. 15/3303, S. 3; A. Begemann/H. Luster, Emissionshandel: Probleme des Anwendungsbereichs und Auslegungsfragen zu Härtefallregelungen des ZuG 2007, NVwZ 2004, S. 1292 (1294).

(2) 배분법 2007 제7조 제11항

과거의 배출량에 기초한 배출권의 배분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 시설의 경제적인 리스크를 부담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대불가능한 피해(unzumutbare Härte)을 초래하는 경우, 배출권의 배분은 조업자의 신청에 기초하여 동법 제8조의 적용하에 확정된다. 요컨대 상술한 동법 제7조 제10항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동조 제11항의 규정은 「중대한 부당성」(grobe Unbilligkeit) 또는 「과도한 부담」(übermäßige Belastung)이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기대불가능한 피해의 고려라는 헌법적합적인 원칙(verfassungsmäßige Gebot)을 고려에 넣은 것이라 할 수 있다.⁴²⁾ 다만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피해구제규정과 마찬가지로 개별규정이며 따라서 그것에 상응하게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⁴³⁾

(3) 선택규정

전술한 바와 같이 현존시설에 대한 배출권의 배분은 원칙적으로는 배분법 2007 제7조·제8조에 의하여 과거의 배출량 또는 신청된 배출에 기초하여 행해지지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의 이른바 선택규정(Optionsregelung)이 동법 제7조 제12항 및 제8조 제6항에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존시설의 조업자는 과거의 배출량 또는 신청된 배출에 기초한 배출권의 배분 대신에 동법 제11조의 추가적인 신규시설에 대한 규정에 따른 배분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규시설을 위한 동법 제6조의 예비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동법 제7조 제12항 2문). 이 선택규정의 의의는 원래 기준기간에 있어서의 비전형적인 사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신규시설규정의 적용을 통하여 회피할 보다 폭넓은 가능성을 더욱 현대적인 시설에 관하여 형성하는데 있었으며,⁴⁴⁾ 따라서 동법 제7조 제12항과 제8조 제6항에서는 상대화함이 없이 동법 제11조의 법적 효과를 참조하도록 지시되어 있다.

42) D. Weinreich/S. Marr, NJW 2005, S. 1083. Vgl. BVerwGE 23, S. 149; BVerfGE 95, S. 267 = NJW 1997, S. 1975.

43) D. Weinreich/S. Marr, NJW 2005, S. 1083.

44) D. Weinreich/S. Marr, NJW 2005, S. 1083.

V. 배출권거래와 관련문제

1. 배출권거래법의 헌법적합성

배출권거래법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관점에서는 연방이미시온방지법에 따른 요허가시설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해서 보고하고 또한 그것을 위한 배출권을 발행하도록 배출권거래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의무는 이미시온방지법상의 허가를 부적절한 형식으로 제한할런지도 모르며,⁴⁵⁾ 또한 허용되지 않는 입법적 침해(Legaleinteignung)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의 자유의 위헌적인 내용결정 및 제한할런지도 모른다⁴⁶⁾는 헌법적합성에 대한 원칙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⁴⁷⁾

그러나 연방이미시온방지법상의 허가의 법적 제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상의 의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되고 있다.⁴⁸⁾

우선 배출권거래법 제4조 제7항 1문에 의한 입법적 침해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부가적인 요구의 형성을 통해서 이미시온방지법상 허가된 시설의 조업자로부터 어떤 소유권지위(Eigentumsposition)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설의 그 밖의 조업을 위한 요건들이 변경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⁴⁹⁾ 또한 배출권거래법 제4조 제7항 1문과 관련한 제5조·제6조 및 새로이 삽입된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들도 기본법 제14조 제1항 2문(소유권의 내용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EU배출권거래지침에 근거한 온실가스배출의 제한을 위한 배출권거래법의 요구는 시설조업자에 대한 부가적인 의무를 근거지우고

45) 이것은 배출권거래법 제4조 제7항 1문에 의한 조업허가(Betriebsgenehmigung)의 법적 변경에 관련되어 있다. Vgl. VG Karlsruhe, NVwZ 2005, S. 112.

46) C. Weidemann, Emissionserlaubnis zwischen Markt und Plan - Rechtsstaatsrelevante Probleme des Emissionshandels, DVBl. 2004, S. 727; W. Frenz, Ökosteuer-urteil und seine Folgen für den Emissionshandel, NuR 2004, S. 429 (431 ff.). 한편 입법적 침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Vgl. BVerfGE 104, S. 1 = NVwZ 2001, S. 1023 = NJW 2001, S. 3256 L; BVerfGE 58, S. 300 (330) = NJW 1982, S. 745.

47) Vgl. insb. VG Würzburg, NVwZ 2005, S. 471.

48) 이하의 서술은 주로 D. Weinreich/S. Marr, NJW 2005, S. 1080에 의거하였다.

49) VG Würzburg, NVwZ 2005, S. 471.

있지만, 단지 이미시온방지법의 한도내에서도 -가령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17조(사후적 명령) 또는 제21조(허가의 철회)의 규정으로부터 분명해지는 바와 같이- 허가된 시설은 절대적인 존속보장(Bestandsgarantie) 또는 무제한의 신뢰보호를 향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소를 위한 새로운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연방이미시온방지법에 따른 허가의 존속력(Bestandskraft)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에서 나오는, 소유권법상 보호된 조업자의 법적 지위의 내용을 새로이 정의하고 있다. 조업자의무(Betreiberpflicht)가 행정청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적 수단으로서의 배출권거래의 도입을 통해서 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아니한다.⁵⁰⁾

한편 당해 기업의 법적 지위의 있을 수 있는 약화는 직업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소유권보장의 관점하에서도, 법률상의 새로운 규율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유권의 새로운 규정에 의한 비례원칙의 위반은 배출권거래법 및 배분법 2007의 규정들로부터 전체적인 관점에서 현존시설에 대한 기대불가능한 부하가 발생하는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배분법 2007은 바로 존속보호라는 이유에서도 배출권의 무료의 배분을 규정함(동법 제18조)과 아울러 현존시설에 관해서는 약간의 예외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로써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 부당한 피해가 회피되고 또한 새로운 법적 상황의 적절한 이행이 확보되어 있다. 게다가 배출권거래의 도입을 위한 대응책으로 시설 조업자는 새로운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관하여는 위험방지를 능가하는 질서법상의 의무가 면제되어 있다. 기후보호의 개선을 위한 질서법적 수단, 특히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효율성 원칙(Effizienzgebot)에 비하여 배출권거래는 경제적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또한 더욱 온화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산화탄소의 삭감을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인지 또는 부가적인 권리를 취득할 것인지의 결정을 당해 기업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한도 내에서는 비례의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⁵¹⁾

50) BVerwG, NVwZ 2005, S. 1178; D. Weinreich/S. Marr, NJW 2005, S. 1080.

51) D. Weinreich/S. Marr, NJW 2005, S. 1080; L.O. Michaelis/Ch. Holtwisch,

2. 배출권거래와 보조금

온실가스의 배출권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정부에서 기업에 주어지면 그것은 기업간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배출권의 배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서는 경쟁법상의 관점에서도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EU배출권거래지침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허가증의 배분 및 발행은 유럽공동체조약, 특히 제87조-제88조의 보조금법상의 규정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배출권의 무료교부가 보조금(Beihilfen)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또한 따라서 국내할당계획이 경쟁법상의 관점에서 유럽연합위원회에 의해서 심사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⁵²⁾ 이러한 논의들은 특히 배출권이 「국가의 재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예컨대 기업에게 배출의 삭감 없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배출권이 배분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의 발생이 있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보조금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의 초안에 있어서는 특히 석탄산

Die deutsche Umsetzung der europäischen Emissionshandelsrichtlinie, NJW 2004, S. 2127 (2129); C.-S. Schweer/Ch. v. Hammerstein, a.a.O., § 6 Rn. 32-36; M. Burgi, Grundprobleme des deutschen Emissionshandelssystems: Zuteilungskonzept und Rechtsschutz, NVwZ 2004, S. 1162 (1163 ff.); vgl. auch VG Karlsruhe, NVwZ 2005, S. 112; VG Würzburg, NVwZ 2005, S. 471; BVerwG, NVwZ 2005, S. 1178.

52) 문헌에서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Vgl. Th. Döring/D. Ewringmann, "Marktgerechtes Emissionshandelssystem" - Zur Bewertung ausgewählter Gestaltungsoptionen eines europäischen CO₂-Emissionshandelssystems aus ökonomischer Sicht (2003), S. 42 ff.; Ch. König/J.-D. Braun/R. Pfromm, Beihilfenrechtliche Probleme des EG-Emissionsrechtehandels, ZWeR 2003, S. 152 ff.; Th. Döring/D. Ewringmann, Europäischer CO₂-Emissionshandel, nationale Gestaltungsspielräume bei der Vergabe von Emissionsberechtigungen und EU-Beihilfenkontrolle, ZfU 2004, S. 27 ff.; A. Reuter/K. Kindereit, DVBl. 2004, S. 537 ff.; U. Sudmann/A. Fisahn, UPR 2004, S. 418 f.

업이 이익을 얻는 배분법 2007 제10조에 따른 대체시설에 대한 양도규정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다. 그러나 「특히 석탄부문에 있어서의 배기가스권(Abgasrechte)의 너무 관대한 배분」이라는 유럽연합 환경위원인 Wallström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어김없는 배출권거래의 시작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 유럽연합위원회에 대한 독일연방정부의 정치적 압박에 의하여 양도규정은 2004년 7월 7일에 본래 대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⁵³⁾

이에 대하여 에너지생산자인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에너지주식회사(EnBW)는 배분법 2007 제10조의 양도규정을 석탄산업에 대한 위법한 보조금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2004년 9월 27일 유럽재판소에 유럽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즉, 소송의 대상은 관련된 시설의 사업자에 대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권을 규율하고 있는 독일의 배분법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동의이다. EnBW는 배출권거래의 경쟁왜곡적인 독일에의 전환에 대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일관되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다. 동 회사는 독일의 배분법은 유럽지침의 공동체조화적인 전환을 위반하고 있고 또한 유럽규정의 직접적인 위반하에 EnBW의 국내경쟁자를 우대하고 있다는 논거로써 자신의 소송을 근거지우고 있다. EnBW의 관점에서는 배분법에 포함되어 있는 양도규정은 유럽공동체조약은 물론 EU배출권거래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위법한 보조금인 것이며, 따라서 EnBW의 소송은 독일의 배분법에 대한 동의를 위한 유럽위원회의 결정의 무효선언을 구하고 있다.

VI. 맺음말

지구온난화는 21세기 최대의 환경문제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지 여부

53) U. Sudmann/A. Fisahn, UPR 2004, S. 418 f. 또한 유럽재판소(EuGH)는 독일의 환경세(Ökosteuern)와 재생에너지법(Erneuerbares Energien Gesetz: EEG)에 대해서는 명백히 비보조금규정(Nicht-Beihilfe-Regelung)으로 분류한 반면에, 덴마크와 영국에서 이미 존재하는 국가적인 거래시스템에 있어서의 배출허가증(Emissionszertifikate)의 무료교부는 국가의 보조금으로 간주하였다.

를 검증하는 상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배출권거래제도는 규제적 수단의 기능부전 내지 한계를 보충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의 감축에 있어서 생태적 적확성과 비용효율성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효한 환경보호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EU배출권거래지침의 국내법화로서의 배출권거래법과 국내배분계획 및 이에 기초한 배분법 2007에 근거하여 2005년 1월부터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선 배출권거래법은 일정한 에너지집약적인 시설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위해서는 배출허가를 요한다. 또한 동법은 배출권거래의 투명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배출권거래등록부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출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배출권의 배분은 배출권거래제도에 있어서 중심적인 의의를 가지는 바, 배분법 2007에 의하면 개별적인 시설에 대한 배출권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현존시설의 경우에는 Grandfathering에 따라서, 그리고 신규시설의 경우에는 benchmark에 따라서 무료로 배출권이 배분된다. 다만 동법에서는 배출권의 배분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세계 10위로서 2013년 이후 의무감축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속가능발전(2007. 7. 3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차제에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법적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도의 법제화에 있어서는 독일에서 배출권거래법 및 배분법에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헌법적합성의 문제 등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동향분석 및 국내 도입방향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 韓貴鉉, 環境リスク의 統制에 관한 法理, 環境法研究 第27卷 4號 (2005).
- 大塚 直, EU의 排出枠取引制度とわが國の課題, ジュリスト 第1296號 (2005).
- 濱坂豊澄, 温暖化對策としての 排出量取引制度の導入, 立法と調査別冊, 2006. 1.
- A. Begemann/H. Luster, Emissionshandel: Probleme des Anwendungsbereichs und Auslegungsfragen zu Härtefallregelungen des ZuG 2007, NVwZ 2004.
- A. Epiney, Emissionshandel in der EU, DVBl. 2002.
- A. Reuter/K. Kindereit, EG-Emissionshandelsrichtlinie und Beihilferecht am Beispiel prozessbedingter Emissionen, DVBl. 2004.
- C.-S. Schweer/Ch. v. Hammerstein, Treibhausgas-Emissionshandelsgesetz (TEHG), Kommentar, 2004.
- D. Weinreich/S. Marr, Handel gegen Klimawandel - Überblick und ausgewählte Rechtsfragen zum neuen Emissionshandelssystem, NJW 2005.
- E. Rehbinder/M. Schmallholz, Handel mit Emissionsrechten für Treibhausgase in der Europäischen Union, UPR 2002.
- L.O. Michaelis/Ch. Holtwisch, Die deutsche Umsetzung der europäischen Emissionshandelsrichtlinie, NJW 2004.
- M. Burgi, Grundprobleme des deutschen Emissionshandelssystems: Zuteilungskonzept und Rechtsschutz, NVwZ 2004.
- P. Ebsen, Emissionshandel in Deutschland, 2004.
- S. Kobes, Grundzüge des Emissionshandels in Deutschland, NVwZ 2004.
- S. Marr/F. Wolke, Das Emissionshandelssystem nimmt Formen an,

NVwZ 2006.

- Th. Döring/D. Ewringmann, Europäischer CO₂-Emissionshandel, nationale Gestaltungsspielräume bei der Vergabe von Emissionsberechtigungen und EU-Beihilfenkontrolle, ZfU 2004.
- U. Sudmann/A. Fisahn, Die Umsetzung des Emissionshandels in Deutschland, UPR 2004.
- W. Frenz, Genehmigungsbedürftige Anlagen nach de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und Emissionshandel, NVwZ 2006.

<Zusammenfassung>

Globale Erwärmung und Emissionshandel
: im Zusammenhang mit Emissionshandelsrecht 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Han, Kwi Hyeon

Die Erderwärmung ist die größte Umweltfrage des Jahrhundert 21 geworden. Das Kyoto-Protokoll im 1997 zur Reduktion des Treibhausgases, das Erderwärmung verursacht, bestimmt Reduktionsziel, und erkennt insbes. internationale Emissionshandel als Kyoto-Mechanism an.

Das Emissionshandelssystem als neuartiges Umweltschutzinstrument ist als solches System angesehen, das ökologische Treffsicherheit mit ökonomischer Kosteneffizienz bei der Bekämpfung des Klimawandels vereint.

In Deutschland ist der Emissionshandel aufgrund des Treibhausgas-Emissionshandelsgesetzes zur Umsetzung der EU-Emissionshandelsrichtlinie im nationalen Recht und Zuteilungsgesetzes 2007 in Kraft getreten. Zuerst findet das Treibhausgas-Emissionshandelsgesetz die Anwendung lediglich in die Emission von CO₂ von bestimmten energieintensiven Anlagen. Die Emission von CO₂ braucht Emissionsgenehmigungen. Und auch das Gesetz enthält Emissionshandelsregister zur Sicherstellung der Transparenz und Effektivität des Emissionshandels, schreibt auch die Zahlungspflicht gegenüber der Verletzung der Abgabepflicht vor.

Die Zuteilung der Emissionsberechtigungen kommt in einem Emissionshandelssystem zentrale Bedeutung zu. Gemäß Zuteilungsgesetz 2007 ist die Emissionsberechtigung für die einzelne Anlage bei Bestandsanlage nach Grandfathering, bei Neuanlage nach benchmark kostenlos zuzuteilen. Das Gesetz enthält aber auch einige Sonderzuteilungsregeln, die sich Zuteilung der Berechtigung beziehen.

Schließlich ist es bei Korea als sinnvoll anzusehen, dass die Einführung

des Emissionshandels rechtlich diskutiert. Bei der Rechtssetzung des Emissionshandels ist insbes. die Verfassungsmäßigkeit des Emissionshandelsrechts zu achten.

주 제 어 : 국내배분계획, 배출권, 배출권거래, 배출권거래등록부, 배출허가, 지급의무
Keywords : Nationaler Zuteilungsplan, Emissionsberechtigungen, Emissionshandel, Emissionshandelsregister, Emissionsgenehmigung, Zahlungspflicht